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르네상스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19년 8월 1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8. 1.(목)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이민영 과장(044-203-5540)	담 당 자	김정두 사무관(044-203-5568)

'19년 상반기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소관 행정규칙 내 756건 규제 중 368건 심사 -

- 인증·입지, 산업일반·무역투자, 국가표준 분야에서 94건 규제 개선·폐지 -

□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계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

** '19년 상반기 중 全부처 1차 종합 성과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동시 배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도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 **'19.3~5월** 중에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112건)도 재점검 하였습니다.

○ **'19.6~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 결과 ①**인증·입지**, ②**산업·무역투자**, ③**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94건(25.5%)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편,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27.7%)**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비 주안점 】

□ 해당 규제는 **담당자가 원점에서 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테스크포스 사전 검증,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식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정부·민간 공동위원장(정부 측은 산업부 차관) 포함 19인, 주로 경제단체 임원, 정책·법률 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17인)

○ (ⅰ)**절차·요건 개선**이 필요한 규제, (ⅱ)**시장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 (ⅲ)**상위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규제** 등은 형식·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중점 정비**하면서도,

○ (ⅰ)**생명·안전**, (ⅱ)**환경**, (ⅲ)**국제기준** 등과 관련된 규제는 존치 필요 여부 및 규제 적정성을 **신중 검토**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정비 주요사례 】

□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매출실적 증빙서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신청시 필수사항

개선 **매출실적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3조 제1항 개정('19.6월)

☞ **(효과)**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 부담 완화**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 횟수 제한 삭제**

기존 신기술인증 신청접수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

개선 **'연간 3회' 문구를 삭제**하여 **횟수 제한 폐지**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제3항 개정('19.9월)

☞ **(효과)** 신청접수 횟수 제약 없이 **신기술인증 신청기회 보장**

② **복잡하고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기준**을 **규제 준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신청 관련 기준 요건이 되는 기산점 등 단순화**

기존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사업장 신·증설 개시일, 해외사업장 청산·양도기한 기산점 등이 복잡하여 이해 곤란

개선 **불필요한 구분기준 삭제, 기산점 통일 등 기준 간소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 제9조, 제14조 등 개정('19.12월)

☞ **(효과)**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비 → 피규제자 접근성·이해의 편의성 제고

③ **확인·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행정절차상 필요한 기간은 확대**하여, 규제 상대방의 **의무는 완화하고 권리는 강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표시 확인의무를 수입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토록 변경**

기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시 수입업자가 정부기관인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

개선 **원산지 표시 확인의무**는 수입업자가 아닌 **세관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 제1항 개정('19.9월)

☞ **(효과)** 원산지 표시 확인의무를 정부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

◈ **표준개발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확대**

기존 협력기관이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이의신청 필요

개선 정부 연구개발 관리규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확대**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0조 제1항 개정('19.9월)

☞ **(효과)** 과도하게 짧은 이의신청기간을 확대하여 피규제자 이의신청권 강화

④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나 **위임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검사 기관 인정제도 및 인정을 위한 인력의 적격성 평가 관련 규제를 현재 고시로 운영 중으로, 상위 법령 근거 미비

개선 **규제 필요성 인정 →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 '19.3월)

☞ **(효과)** 법적 근거 마련으로 법률유보 원칙 구현

□ 또한, 현재 시장 수요, 사적자치원칙을 감안하여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정연수기관의 유통연수과정 개설의무 폐지**

기존 지정연수기관은 20시간 이상의 유통연수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설할 의무

폐지 유통연수교육 **시장수요 감소**, 지정연수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부재** 등 현재 여건을 고려할 경우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7조 개정('19.9월)

☞ **(효과)** 지정연수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수요에 따른 자발적 과정 개설 유도

◈ **공동집배송센터 입주에 있어 사적 계약 관련 규제 폐지**

기존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시 입주계약 해제 가능

폐지 **입주계약 관련사항을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 우려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6조 개정('19.9월)

☞ **(효과)**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사업자들간 입주계약 내용에 따라 해제 결정 가능

□ 한편, **제품의 안전성 관련 규제, 상거래 안정성을 위한 계량기준** 등 **존치 필요성·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 정기검사 주기는 합리적 기간으로 존치 필요**

현황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에 1회 정기검사 실시

사유 안전인증제품이 **인증 당시와 동일하게 안전성 및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 운용요령 제40조 제1항

◈ **계량 관련 기술기준*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존치 필요**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기준

현황 주유기, 오일 미터 등 액체용 계량기의 주요부 구성, 등급, 최대허용오차 등 액체용 계량기가 적절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기준 제시

사유 **계량의 정확성·신뢰성을 유지하여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액체용 계량기 관련 **국제기준인 OIML R117-1에 부합하는 기준**이므로 존치

*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제3조 등

【 건의과제 재검토 주요사례 】

□ **대표적으로 개선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제품 안전은 엄격 관리하되, **제조기업의 중복 인증부담은 완화**합니다.

◈ **KC 인증 받은 기존 모델을 조합한 복합 조합놀이대 중복인증 개선**

기존 이미 KC 인증 받은 단일모델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델 제작시에도 신규 인증 필요

* '조합놀이대' 모델에 기인증 받은 '그네' 모델과 '미끄럼틀' 모델 탑재 시, 기인증 받은 '그네' 모델과 '미끄럼틀' 모델에 대해서도 모든 시험·검사항목 새로 적용

개선 이미 KC **인증 받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 제작**시, **중복 검사항목을 제외**하도록 제도 개선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개정('19.12월)

☞ **(효과)** 단일모델을 조합한 복합 조합놀이대 인증 신청기업의 KC 인증비용 부담 완화

②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 수출지원제도 활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일감 수주를 지원**합니다.

◈ **번역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추가**

기존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실적으로 불인정

→ 무역금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외 일감 수주 과정에서 수출 실적 증명이 어려워 애로

* 경영 컨설팅, 법무, 회계·세무, 디자인 서비스 등

개선 번역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하여 수출 실적으로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9.9월)

☞ **(효과)**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무역금융지금 지원대상 포함 등을 통해 국내 번역서비스기업 수출지원 강화

③ **소규모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입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 요건 완화**

기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10개 기업의 입주가 필요하여, 소규모 단지의 경우 협의회 설립 곤란

* 상생산단 조성사업 등 지원사업 대상이 대부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정되어 있어, 협의회가 없을 경우 대상 배제

개선 **관리권자의 판단에 따라 협의회 설립요건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검토**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8조 개정('19.12월)

☞ **(효과)** 소규모 단지 내 입주기업체들도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설립하여 자율적 관리 및 지원사업 참여 가능

④ **규제 샌드박스제도**와 연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가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를 추진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합니다.

◈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대상으로 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기존 전력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는 리튬 이차전지 방식만 해당

개선 **리튬 이차전지 방식 이외 레독스플로 이차전지의 경우에도 에너지저장장치용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활용**

→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심사결과*에 따라 안전성·성능 확인 추진 중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4.29) 심사 → 안전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 기준 마련 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효과)** 에너지저장장치 이차전지 범위 확대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이차전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배터리 수급 문제 개선

□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등은 규제완화 건의에도 불구하고 **존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용완료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운반차량에 적재해 주차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불허**

현황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수요자에게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보관실 내에 보관 필요

- 회수된 잔가스 용기를 운반용 차량에 적재하여 허가장소 주차장에 주차 상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건의

사유 사용 완료 후 회수된 용기라 하더라도 **미량의 잔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용기보관실 보관이 타당**

* 법적 용어도 빈 용기가 아닌 잔가스 용기로 규정·관리

□ 한편, 1차적으로 수용 곤란으로 회신하였으나, 규제입증책임제 과정에서 재점검한 결과, **정책여건·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개선 중임을 확인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구매 캠페인인 **알이(RE) 100* 이행기반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필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향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비엠더블유(BMW) 등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

◈ **녹색 요금제 도입**

기존 민간기업은 평가기관·비정부기구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알이(RE) 100)받고 있으나, 별도 구매제도 부재

개선 **민간기업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 요금제 도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19.10월)

☞ **(효과)**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소비 확대에 기여

② 변화된 입지환경을 반영, **청년 근로자 편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서 복지시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활동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비중 확대**

기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규모를 건축 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

개선 **건축 연면적의 30%까지 상향 조정 → 지원시설 입주 확대**

*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4항 개정('19.8월)

☞ **(효과)** 정보기술·지식산업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 내 편의·복지시설 확대로 청년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③ 어린이 제품 관련 **부처간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제 상대방의 부담은 줄이되,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 관리**토록 합니다.

◈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통합**

기존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일부 물질에 대하여 산업부·환경부간 기준이 상이하여 이중규제 효과

* 플라스틱 등 고분자 물질에 유연성 및 탄성을 부여하는 첨가제

개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산업부 기준으로 일원화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19.12월)

☞ **(효과)** 국제기준에 따른 기준 일원화로 피규제자 부담 완화

【 평가 및 향후 계획 】

□ 금번 규제입증책임 하의 행정규칙 정비 등으로, **해묵은 수용곤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절차적으로도 **외부 전문가 사전검증, 경제단체·건의자·공무원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함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 (A 산업부 규제개혁위 위원 의견)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피규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

(B협회 C차장 의견) 건의과제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직접 규제개혁위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 앞에서 애로사항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하게 되어 좋았음

(D 공무원 의견) 동 제도를 통해 소관 규제조항 전반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설 규제 추진 시 먼저 입증 가능한 규제인지 살펴보게 되었음

□ **'19.8월부터**는 그간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 54개 행정규칙**을 심사*(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388건 규제)하여 **연내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안전(8월) → 석유·가스(9월) → 전력·에너지효율(10월) → 신재생·원전(11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정두 사무관(☎ 010-4596-3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행정규칙 정비 주요 사례

1 개선·폐지 사례

분야	행정규칙명	규제사무	정비내용	완료시한
인증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요령	품질인증의 신청 (제13조)	기존 품질인증 신청시 매출실적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사항으로, 판매실적 없는 신청제품의 인증 신청 불가 개선 신청서상 매출실적 증빙서류 제출은 선택사항으로 변경	'19.6월 (개정완료)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제3조)	기존 신기술인증 신청접수 횟수를 "연간 3회" 원칙으로 제한 개선 "연간 3회" 문구를 삭제하여 신청접수 기회 확대	'19.9월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공인시험.검사 기관 신청, 유지, 취소 등 (제18조 등)	기존 국제기준에 따른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에 별도 법적 근거 없음 개선 적합성평가관리등에대한법률(제정)을 통해 법체계 정비	'19.3월 (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입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신청기한 등 (제8조)	기존 유턴기업 신청기한이 청산완료일과 축소개시일,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일 등 각기 규정 개선 청산.축소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통합,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관련 규정 삭제	'19.12월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 등 (제9조)	기존 국내사업장 신증설 개시일을 신청기업의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 개선 국내사업장 신증설 개시일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에 보다 충실한 기업에 대한 이익 제고	'19.12월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기한 (제14조)	기존 청산·양도 기한의 기산점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여부에 따라 선정일과 완료일로 달리 규정 개선 기한의 기산점을 선정일로 통일	'19.12월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제16조)	기존 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 면적은 관리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확대하여 고시 불가 개선 기간제한규정 삭제 → 1년 이내에도 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	'19.12월

산업 일반	유통산업 발전법령 시행세칙	지정연수기관 연수교육 실시, 유통연수과정 개설 (제7조)	기존 지정연수기관은 20시간 이상의 유통연수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설할 의무 폐지 유통연수교육 시장수요 감소, 지정연수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부재 등을 고려,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자발적 과정 개설 유도	'19.9월
		입주계약의 해제 (제16조)	기존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시 입주계약 해제 가능 폐지 사업자들간 입주계약 관련사항을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 우려	'19.9월
	전기·전자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 지침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기존 지침 목적이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나, 규제대상을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으로 규정 개선 지침 목적에 맞게 규제대상을 재질·구조 개선 전자제품으로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규율 범위 조정	'19.12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4-11조)	기존 수입승인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시 수입수량의 변경은 승인 받은 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개선 '100분의 10'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100분의 1)를 벗어난 부분으로 삭제	'19.12월
		수입승인 및 생산승인의 취소 (제4-12조)	기존 부정한 승인 등 승인사항에 중대한 결격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 개선 상위법령(법 제17조, 시행령 제18조)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	'19.12월
무역 투자	대외무역 관리규정	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 (제83조)	기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시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 개선 수입업자가 아닌 세관장이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의무 주체 변경	'19.9월
	수출물품 원산지 발급규정	원산지증명서 확인 요청 (제1조의10)	기존 원산지 증명서 확인 필요시 신청자의 증빙자료 제출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 개선 기재부에서 관세법에 근거하여 증빙자료 제출기간 제한이 포함된 훈령 제정 중으로, 훈령 제정 완료시 동 내용 삭제	'19.12월

표준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협력기관 지정 취소 이전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개선명령 (제15조)	기존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개선 개선명령과 달리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 행정지도 형태의 개선권고로 규제 완화	'19.9월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제20조)	기존 협력기관이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이의신청 필요 개선 정부 R&D 관리규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확대	'19.9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에 대한 인정취소 (제24조)	기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특정한 경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인정 취소를 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 개선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 마련 *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旣발의	'16.10월 (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2 존치 사례

분야	행정규칙명	규제명	현황 및 존치 사유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정기검사 (제40조)	현황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에 1회 정기검사 실시 사유 안전인증제품이 인증 당시와 동일하게 안전성 및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
표준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측정시스템의 미터와 보조장치 요건 등 (제1장 제4조 등)	현황 주유기, 오일 미터 등 액체용 계량기의 주요부 구성, 등급, 최대허용오차 등 액체용 계량기가 적절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기준 제시 사유 액체용 계량기 관련 국제기준인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R117-1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존치

붙임2 규제입증책임제 하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주요 개선 사례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개선	기존 旣 KC인증 받은 단일모델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델 제작시에도 단일모델별 신규 인증 필요 개선 새로운 조합모델 시험·검사와 별개로 旣 KC 인증 받은 단일모델에 대한 중복 시험·검사 제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고시) 개정	'19.12월
번역서비스를 수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분류	기존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미인정 개선 번역 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수출지원제도 활용대상에 포함	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 개정	'19.9월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기존 소규모 단지 내 10개 미만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 협의회 설립기준상 구성 불가 개선 협의회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 검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으로 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기존 전력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리튬 이차전지 방식에 한하여 인정 개선 리튬 이차전지 방식 이외에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ESS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제도 활용 추진	규제 샌드박스 활용	'19.4월 (규제특례 심의회 정책권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기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요청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 개선 승인기한 연장을 2년 이내 범위로 확대	경자구역법 국회제출	'19.12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간 1개월 시차 제거	기존 LNG 발전소 변동비를 전월 가스요금으로 산정 → 실제 연료비와 차이로 초과손익 발생 개선 발전단가 평가시 당월 가스요금 적용	천연가스 공급규정, 비용평가 세부운영 규정 개정	'19.3월
녹색요금제 도입	기존 민간기업은 RE100 참여를 요구받고 있으나, 민간기업을 위한 신재생 전력 구매제도 없음 개선 신재생 전력 구매를 위한 녹색요금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	'19.10월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활동 지원시설 규제 완화	기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규모를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 개선 건축연면적의 30%까지 상향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	'19.8월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통합	기존 어린이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환경부 별도 기준에 따른 이중 규제 개선 국제기준인 산업부 안전기준으로 일원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개정	'19.12월